



## 명쾌한 수다

# 언론보도로 인해 지상과 방송에 얼굴이 노출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일까?

### 〈사건의 개요〉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행사에 초대받았으며, 원고는 소속 단원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3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하며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센터의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상황을 피고측은 약 4분 48초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방송에서 약 32초간 이 동영상이 사용되면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법리

####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 조각 법리

1.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고, 신문보도 및 인터넷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그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

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결론

그러므로 대법원은 이 사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